

보도시점 : 2026. 8. 23.(일) 11:00 이후(8. 24.(월) 조간) / 배포 : 2026. 8. 21.(금)

철도시설 점검은 더 빠르게, 음주측정 방해는 더 엄격하게… 「철도안전법」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

-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 토지 출입 절차 마련으로 신속한 시설 점검 지원
- 음주측정방해 금지 물품 명시… 혈중알코올농도 왜곡 ‘꼼수’ 원천 차단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운덕)는 「철도안전법」(’26.6.16.공포, ’26.12.17.시행)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,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(시행령·시행규칙)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(8.24.~10.6.)한다.

- 「철도안전법」 개정안은 신속한 시설물 점검을 위해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보호지구* 내 타인의 토지를 출입·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, 철도운영자가 음주·약물을 사용한 철도종사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, 철도종사자가 음주측정 전에 술 등을 복용하는 등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* 철도보호지구: 철도경계선(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)으로부터 30미터 이내

- 이를 위해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은 긴급한 시설물 점검으로 인해 철도운영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를 위한 통지 절차와 음주측정 전 복용 시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금지물품에 대한 사항이다.

□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출입 근거 및 거부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

- 개정 법률이 철도운영자 등이 선로 조사·관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(제45조의2), 그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(제82조)되도록 함에 따라,
-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상기 과태료 대상 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도록 기준*을 세분화하였다.(안 별표6)

* 1회 위반 30만원 / 2회 위반 60만원 / 3회 이상 위반 90만원

- 또한,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타인의 토지에 출입*한 경우,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과 토지출입자가 소지하여야 하는 증표의 서식을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,

- * 긴급한 경우 외에는 타인의 토지 출입일 3일 전에 철도운영자는 소유자에게 통지의무
- 시행규칙 개정안은 긴급한 출입의 경우, 지체 없이 목적·장소·기간 등을 서면·우편·이메일 등으로 통지(안 제76조의11)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토지출입자의 신분증표 서식을 규정하였다(안 제76조의12).

② 철도종사자의 음주·약물 사용 사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

- 개정법률이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·약물 사용 사실을 확인한 경우,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(제41조),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함에 따라(제82조),

-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상기 신고의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도록 기준*을 세분화하였다.(안 별표6)

* 1회 위반 150만원 / 2회 위반 300만원 / 3회 이상 위반 450만원

- 아울러, 철도종사자 음주단속을 담당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*에게 상기 과태료 처분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.

* 현재 철도종사자 음주단속 권한 철도경찰대장에게 위임(철도안전법시행령 제62조)

③ 음주측정 전 복용 시 측정방해로 간주되는 금지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

- 개정법률이 음주 확인·검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‘음주측정 방해 행위’로서 엄격히 금지하고, 해당 의약품 등의 구체적 지정을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(제41조),

-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상기 금지물품으로서 의약품 2종*(심장치료제 베라파밀 염산염, 항생제 에리트로마이신)을 규정하였다.(안 제76조의10)

* 도로교통법시행규칙(제27조의3)도 동일 의약품을 음주 측정 전 사용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금지 물품으로 규정

-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“이번 개정으로 긴급한 철도시설 점검 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고, 철도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·약물사용의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면서,
- “앞으로도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-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의 “정책자료-법령정보-입법예고·행정예고”에서 확인 가능하고, 우편*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* 주소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

담당 부서	철도국 철도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동익	(044-201-4600)
		담당자	사무관	박정현	(044-201-4617)
			주무관	한민구	(044-201-4607)
	철도국 철도시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	이상욱	(044-201-4623)
		담당자	사무관	박원제	(044-201-4889)
			주무관	송승민	(044-201-4726)

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| TOMORROW

1 (시행령 개정안)

- (과태료 부과) 철도운영자의 음주·약물 확인된 철도종사자 신고의무 위반 및 철도보호지구 토지 출입 거부 시 과태료(위반횟수별) 부과기준 규정

< **신설** 시행령안 별표6.과태료 부과기준(제64조 관련) >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
		1회위반	2회위반	3회이상위반
허. 법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 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82조 제2항 제7호의2	150	300	450
모. 제4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·일시사용 또는 죽목·토석,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	법 제82조 제4항 제1호의2	30	60	90

- (권한의 위임) 음주(약물) 철도종사자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권한을 철도경찰대장(현재, 철도종사자 음주단속 중)에게 위임

< 시행령안 제62조 개정안 >

현 행	개정안
제62조(권한의 위임)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」 제40조에 따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법 제82조제1항제14호, 같은 조 제2항제7호 · 제8호 · 제9호 · 제10호,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· 징수	제62조(권한의 위임)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」 제40조에 따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법 제82조제1항제14호, 같은 조 제2항제7호 · 제7호의2 · 제8호 · 제9호 · 제10호,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· 징수

2 (시행규칙 개정안)

- (음주측정방해 금지 물품)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어 음주측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 2종(^{심장치료제}베라파밀염산염, ^{항생제}에리트로마이신) 지정

< 시행규칙안 제76조의10 개정안 >

현 행	개정안
<신설>	제76조의10(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)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“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품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베라파밀염산염(Verapamil Hydrochloride) 2. 에리트로마이신(Erythromycin)

- (소유자 통지) 철도보호지구 內 타인 토지 긴급 출입시 통지 절차

< 시행규칙안 제76조의11 개정안 >

현 행	개정안
<신설>	제76조의11(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 등의 통지) ① 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입 또는 행위 종료 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. 1. 출입 또는 행위의 목적 2. 출입 또는 행위의 장소 3. 출입 또는 행위의 일시 및 기간 4. 수행기관 및 담당자의 성명·연락처 5.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1. 서면 교부 또는 우편 2. 전자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 3. 현장 고지 또는 그 밖에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③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연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출입 장소에 통지 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.

○ (출입증표) 철도보호지구 內 타인 토지 출입 증표에 관한 사항 규정

< 시행규칙안 제76조의12 개정안 >

현 행	개정안
<신 설>	제76조의12(토지출입권한증명서) ① 법 제45조의2제7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5호의20서식의 토지출입권한증명서에 따른다.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출입권한증명서는 철도운영자등의 장이 발행한다. ③ 다만, 법 제45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해당 허가의 범위에서 증명서를 발행한다. ④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위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대행자 소속 직원에게 토지출입권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○ (출입증표-별지서식) 토지출입권한증명서

< 시행규칙안 별지 제45호의20서식 >

현 행	개정안
<신 설>	토지출입권한증명서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발급연월일 유효기간 년 월 일 ~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「철도안전법」 제45조의2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12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발행기관장 직인 91mm×64mm[백상지(150g/㎡)]